경제활력대책회의
19-2

혁신성장
오늘을 바꾸고 내:일을 만든다

공유경제 활성화 방안

[서비스산업 혁신Ⅱ]

2019. 1. 9

관계부처 합동

요약본

Ⅰ. 추진배경

□ **공유경제**란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**자산·서비스**를 **타인**과 **공유**하여 사용함으로써 **효율성을 제고**하는 경제 모델*

* 개인, 기업, 공공기관 등이 유휴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 등

○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**소비 패러다임 변화**(소유 → 공유), **온라인 플랫폼**을 통한 P2P **거래증가**와 함께 **공유경제 확산**

* 세계 시장규모 : ('17년) 186억 달러 → ('22년) 402억 달러('17, Juniper research)
** 국내 시장규모는 작으나, 높은 국민 참여도·관심도를 바탕으로 수요확대 전망

→ **新서비스 시장 창출**을 위해 ①진입규제 개편 등을 통한 **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**, ②공유경제의 **제도적 기반 마련** 등 추진

Ⅱ. 주요 추진과제

1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

□ (**숙박**) **도시지역 내국인 대상**으로 거주 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**숙박공유 허용*** 추진(年 180일 한도, 관광진흥법 개정)

* 현재 농어촌지역은 내·외국인 모두 대상 숙박공유가 허용되나,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 가능

○ **기존업계**와 **상생**을 위해 **품질인증**을 받은 **숙박업소 육자** 등 **지원**, **불법 숙박업소 근절**, **세제지원 확대**, **민관협의체*** 운영 등 추진

* 전통 숙박업계, 숙박중개 플랫폼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참여

□ (**교통**) **기존 교통수단**과 O2O(online to offline) 서비스를 결합한 **新교통서비스 활성화**

○ **카셰어링 배차·반납장소**를 **단계적**으로 **자율화**하는 등 **규제**를 **개선**하고,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**세제지원 강화**

* 현재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·반납은 업체별 카셰어링 전용구역에서만 허용

○ **플랫폼**을 이용한 **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**, **광역버스**의 **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** 등 추진

○ 승차공유는 **사회적 대타협**을 통해 **상생방안**과 **함께 추진**

□ (공간) **주차장, 주거 공간, 공공자원** 등의 개방·공유 활성화

○ **거주자 우선주차장**을 **공유**시 **요금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**

○ 주거공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**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**

○ **정부, 공공기관** 등이 보유한 회의실, 강당, 체육시설 등 **국내외 유휴공간 공유**를 위한 **예약·결제 플랫폼** 구축

* 442개 기관의 회의실, 강당, 주차장, 연수원 등 개방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중

□ (**금융·지식 등 기타**) P2P, **크라우드펀딩** 등 **자금공유,**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**지식공유** 등 활성화

○ **P2P 투자소득**에 대한 **이자소득세율**을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수준으로 **인하**(25→14%, '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용)

○ **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**와 **발행한도 확대 추진**

* 발행인: 창업 7년내 중소기업 → 모든 중소기업 / 발행한도: 7→15억원

○ 온라인 대학강의 플랫폼 **K-MOOC 활성화**를 위해 **강좌 개발주체 다양화***, **유료 서비스 도입, 이수강의 학점인정 확대** 등 추진

* 현재 대학, 출연연 등만 가능하나 향후 민간연구기관, 공익법인 등도 강좌 개발주체로 추가 검토

2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

□ (**과세체계 정비**) 납세편의와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**간편 과세기준**을 **마련***하고, **납세 가이드라인** 마련

* 500만원이하 공유경제 수입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

□ (**공급자 보호**)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**서비스 공급자**의 **사회적 보호**를 위해 **산재보험 적용범위**를 **단계적**으로 **확대**

*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방문·돌봄서비스 종사자, IT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('21년)

○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**거래건별 산재보험료 부과·징수체계 마련 추진**

□ (**공유기업 지원 등**) 플랫폼 기업에 대한 **연구·인력개발비 세제 지원** 확대 및 기업이 공유·활용 가능한 **국가데이터 개방 확대**

순 서

Ⅰ. 추진배경 1

Ⅱ. 추진전략 4

Ⅲ. 주요 추진과제 5

Ⅳ. 향후 추진계획 15

Ⅰ. 추진배경

1 공유경제의 등장 및 확산

□ **공유경제**란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**자산·서비스**를 **타인**과 **공유**하여 사용함으로써 **효율성을 제고**하는 경제 모델*

* 개인, 기업, 공공기관 등이 유휴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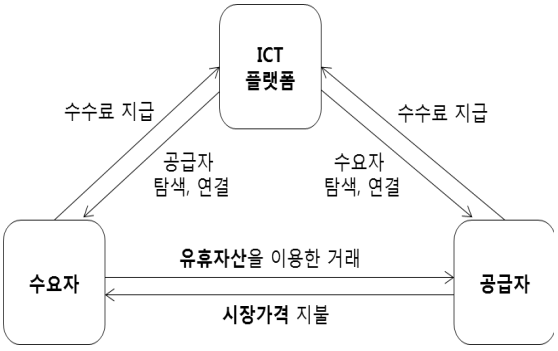
○ 1인 가구 증가,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**소비 패러다임**이 '**소유**'에서 '**공유**'로 **전환**되며 **공유경제**가 주요 화두로 **등장**

□ 최근, **모바일** 등을 통한 **개인간 실시간 거래환경**이 **조성**되면서 교통.숙박*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**P2P 공유경제 모델 확산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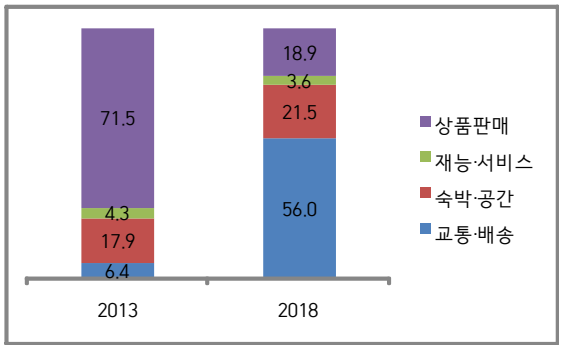
* (숙박)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은 빈 방을 이용한 숙박서비스 공급자-수요자 매칭
(교통) 우버, 디디추싱, 그랩 등 플랫폼은 교통서비스 공급자-수요자 매칭

○ 기존 상품거래 외에 교통, 숙박·공간, 재능 등 **공유경제 거래**가 **온라인·모바일 플랫폼**을 통한 **주요 거래** 분야로 부상

공유경제 모델



분야별 플랫폼 거래 비중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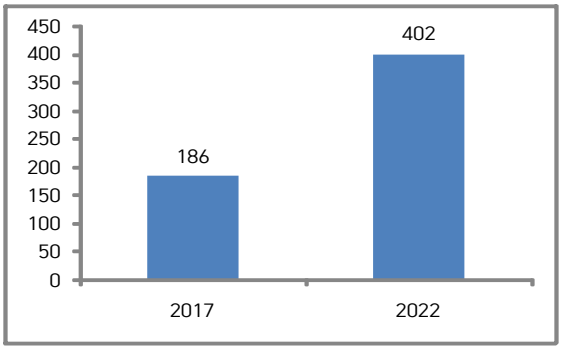
* 자료: JP Morgan, 'The Online Platform Economy in 2018'

□ **공유경제**는 전 세계적인 **시대적 흐름**으로, **지속 확대 전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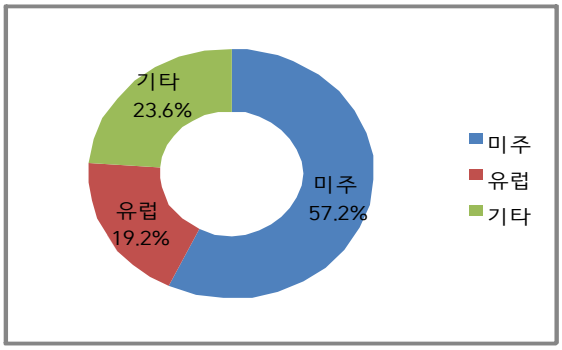
○ **세계 공유경제 시장**(기업매출 기준)은 미주, 유럽을 중심으로 **급성장**하여, '17년 186억불에서 **'22년 402억불**로 확대 전망

○ 세계 대비 **국내시장**은 작으나, 20~30대의 높은 참여도(55%), 40대 이상의 높은 관심도(64.7%)로 **수요확대 전망** (산업연, '16)

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 전망(억불)



'22년 세계 공유경제 시장점유율 전망



* 자료 : Juniper Research(2017)

2 공유경제 활성화의 기대효과

□ 공유경제는 단순 소비변화를 넘어 **혁신성장**을 이끌 **신서비스** 사업 모델로 활성화할 필요

❶ 기존 거래되지 않던 유휴 자원 거래 → **신서비스 시장** 관련 **일자리**를 **창출***하고 **경제·사회**의 **효율성 제고**

* '16년 중국은 공유경제 관련 직접 일자리 85만개, 간접 일자리 1천만개 창출

- 혁신적 서비스를 **선도적**으로 제공한 **해외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**은 **글로벌 거대기업**으로 빠르게 **성장중**

중국 공유경제 일자리 창출 실적(명)

	'15년	'16년
서비스 이용자	5억	6억(+1억)
서비스 제공자	5천만	6천만(+1천만)
공유경제 기업 취업자	500만	585만(+85만)

* 출처: 중국 공유경제발전보고서(중국정부, '17)

상위10개 유니콘기업중 공유경제기업

순위	기업	분야	기업가치
1	우버	교통	720억달러
2	디디추싱	교통	560억달러
3	에어비앤비	숙박	293억달러
6	위워크	공간	200억달러

* 출처: CB Insights('18)

❷ **저렴**하고 **편리**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자산·서비스 제공 → **소비자**(국민) **만족도 제고*** 및 **후생 증진**

* 국내 공유경제 소비자의 77.8%는 향후 지속적 참여를 희망 (산업연, '16)

❸ 저소득층, 청년, 노인 등이 탄력적으로 서비스 **공급자**로 **참여** → **사회적 배려계층**의 **소득증대** 및 **안정화***에 **기여**

* 사람들은 소득 변동성으로 인해 월소득이 평소보다 적거나 이직 과정중에 있을 때에 플랫폼을 통해 얻는 부수적인 소득에 의존 (JP Morgan, '16)

⇨ 공유경제를 **혁신성장**을 위한 **주요 분야**로 **선정**하고, **활성화 방안 마련**

3 공유경제 관련 제도정비의 필요성

□ **해외**에서 활성화된 **공유경제 서비스** 중 일부는 **국내**에서 **진입규제** 등으로 인해 **도입·활성화**에 **제한**

○ 공유경제 공급자는 **유휴자산**의 **일시적 공급자**라는 특성상 **기존 사업자**와 **동일 규제**를 적용하는 것이 **불합리한 측면** 존재

□ 공유경제는 새로운 **거래형태**를 띠고 있어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, 거래과정에서 다양한 **우려요인 존재**

○ 공유경제 참여자는 일시적 공급자의 특성상 전통적 사업자에 비해 **세금신고·납부**에 대한 **전문성**이 **낮음**

○ 근로관계·노동시간이 유동적이며 보험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유경제 **플랫폼 노동자 증가**에 따라 **노동자 보호문제 부각**

○ 공유경제에 대한 **신뢰성 부족***으로 **소비자 피해 우려** 지속

* 공유경제 미참여자의 53.5%는 미참여 이유로 신뢰성저하 지적 (산업연, '16)

⇨ **분야별 공유경제** 모델 **활성화** 및 **제도적 기반 마련** 필요

Ⅱ. 추진전략

◇ 공유경제 활성화가 **신서비스 시장 창출**로 이어지도록 **규제·제도 정비** 및 **지원 강화**

① 교통, 숙박, 공간, 금융·지식 등 **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**
② 과세, 참여자 보호, 기업 지원 등 **제도적 기반 마련**

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서비스시장 창출

목표

- **혁신적인 공유 플랫폼 등장 촉진·활성화**
- **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 제고**

추진 전략

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	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

정책 과제

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	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
■ 숙박 분야 ■ 교통 분야 ■ 공간 분야 ■ 금융·지식 등 기타 분야	■ 과세체계 정비 ■ 공급자·소비자 보호 ■ 공유경제기업 혁신지원

Ⅲ. 주요 추진과제

1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

1. 숙박 분야

◇ 숙박공유는 세계적 확산중이나 국내에선 제한적 허용

○ 관광객이 현지인 거주공간에 숙박하는 **숙박공유**는 **저렴한 가격**으로 **색다른 경험**을 제공하여 **전세계적**으로 **확산**

○ 국내는 **농어촌지역**에서 **내·외국인 모두 대상** 숙박공유가 허용되나, **도시지역**은 **외국인 대상**으로만 숙박공유 가능

①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

○ **도시지역**에서 **내국인 대상**으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**도시민박업 허용** 추진 (관광진흥법 개정)

【해외사례】 미국 샌프란시스코·뉴욕 등 주인 거주시 일수제한 없이 숙박공유 허용, 일본 연 180일, 파리 연 120일, 런던 연 90일 숙박공유 허용 등

- 전문숙박업으로 변질 방지를 위해 본인이 **거주중인 주택***만 등록을 허용하고, **年 180일 이내**로 **영업일수 제한**

* 허용 주택의 종류(예: 단독주택 등)는 추후 시행령으로 규정

○ **지역 숙박시장 상황**을 **고려**하여 **지자체별 탄력적 운영** 허용

- 지역별 상황을 감안하여 **조례**로 입지 지역 및 영업일수 등을 **180일 한도**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**위임** 추진

○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**서비스·안전·위생 기준***을 마련하고, **범죄 전력자**의 도시민박업자 **등록 제한** 검토

* 유사업종(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) 기준을 고려하여 소방·숙박위생 등 의무부과

2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 강화

○ (**기존 숙박업계 발전 지원**) 새로 도입하는 도시민박업과 기존 숙박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**기존 업계 지원책 마련**

- **관광품질인증**을 받은 **일반·생활 숙박업소**에 대해 관광기금 융자* 등 지원, 우수 농어촌민박업 **선정** 및 **홍보지원**** 등

* 관광호텔이 아닌 모텔·여관 등 일반·생활 숙박업소에도 관광기금 융자지원 허용 (4-5년 거치, 4-7년 분할상환, '19년 관광기금 전체 융자규모: 4,920억원)

**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여행 포털 '웰촌'에 등재·소개 등

- **숙박업 종사근로자**에 대한 **야간 근로수당 비과세** 혜택 부여

*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240만원한도로 비과세

- **소규모 숙박업체**에 대한 **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 연장** 및 **공제한도 확대** (500만원→1,000만원)

*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(2.6%)을 여타업종(1.3%)보다 높게 '21년까지 적용 연장

○ (**공정한 경쟁질서**) 숙박공유 규제는 완화하되 공정경쟁을 위해 **불법업소의 시장진입 금지, 플랫폼 기업의 관리책임 강화**

*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 회의('18.9월) 등 기존 숙박업계와의 대화·토론과정에서 숙박업계의 주요 요구사항 반영

-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**주기적인 정부합동 단속** 등을 통해 **불법 숙박업소 근절** 및 건전한 숙박업 생태계 조성

- **숙박 중개 플랫폼**에 대한 **불법 숙박업소 중개 금지의무** 및 **민박업자 관련 자료제출 의무** 부여 추진 (관광진흥법 개정)

* 연간 180일이내 영업일수 제한의무 준수여부 등 점검에 활용

○ (**상생협의체 가동**)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한 협의채널 운영

- **숙박업계 이해관계자**가 참여하는 **민관협의체***를 통해 기존 숙박업계의 **건의사항** 등을 **수집·개선 지속 추진**

* 기존 숙박업계, 숙박중개 플랫폼 업체, 관계부처 등 참여('18.11-12월 2차례 개최)

2. 교통 분야

◇ O2O플랫폼과 교통수단을 결합한 新교통서비스 지속 등장

○ 버스 · 렌터카 등 **기존 교통수단**에 O2O(online to offline)를 **결합**한 새로운 유형의 **교통서비스**가 **지속적으로 등장**

○ 국내 서비스 **허용범위**가 **불명확**하고 **서비스 특성**에 맞는 **규제·제도**가 **미비**하여 공급자·소비자 모두 이용에 불편

1 카셰어링 활성화

❶ **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**(세종·부산) 내에서 운행하는 카셰어링 차량의 **배차·반납장소를 자율화**

- (**기존**) 차량대여업은 주사무소·영업소에서만 허용 →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·반납은 업체별 카셰어링 전용구역에만 가능
- (**개선**) 세종시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는 전용구역 外 장소에서 카셰어링 차량 배차·반납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 (스마트도시법 개정)

❷ 편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**他지역**의 **일시상주기간 확대**(1→3개월)

- (**기존**) 기존 영업소(예: 서울)에 소속된 차량이 타 지역 영업소(예: 부산)에서 영업 및 상주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로 제한
- (**개선**) 타지역 일시상주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여 휴가철 수요에 대응, 편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 극대화 (여객법 시행규칙 개정)

❸ 무인화 등 **환경변화**를 **반영**하여 **고지서 발송장소 변경 허용**

- (**기존**) 카셰어링 이용시 과태료·범칙금 등 고지서는 차량의 등록지인 무인영업소로 발송 → 분실 등으로 회수 어려움
- (**개선**) 무인영업소 운영시 등록지를 영업소·주사무소(본사)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(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·면허 처리요령 개정,)

❹ 친환경차량인 **수소차 카셰어링** 촉진을 위한 **세제지원** 확대

- (**기존**) 카셰어링 업체 등 중소 자동차 대여업자가 전기차를 50% 이상 보유시 법인세·소득세 30% 감면(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) 적용
- (**개선**) 중소 자동차대여업자가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50% 이상 보유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(조특법 개정)

❺ **개별소비세 면제 여부**를 결정하는 사업용 자동차 **대여기간**의 **산정기준**을 **명확화**하여 **세부담**을 **합리적**으로 **완화**

- 현재는 카셰어링 업체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 **동일인**에게 **6개월 이상 대여**시 **개별소비세 부과**

■ (**기존**) 대여기간 산정시 짧은시간(예: 1시간)을 대여해도 1日 대여로 계산

■ (**개선**) 카셰어링 플랫폼에서 자동차 대여기간을 시간으로 측정할 경우 대여기간을 日단위가 아닌 時間단위로 계산 (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)

2 전세·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O2O 서비스 활성화

❶ 모바일 등 **온라인 플랫폼**을 통한 **전세버스** 탑승자 모집 **허용** (노선화되지 않은 비정기·일회적 운행시에 한정)

■ (**기존**) 전세버스는 1개 운송계약 체결만 가능 → 비정기적 운행이더라도 플랫폼 사업자가 전세버스 탑승객을 모집하고 경비를 갹출하는 행위 금지

【사례】 플랫폼 사업자가 스포츠 관람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여 전세버스를 대절 및 탑승자에게 경비 갹출(플랫폼 사업자는 미탑승) → 위법

■ (**개선**) 비노선 운영의 경우,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1개 운송계약으로 간주하여 허용(여객법 유권해석)

❷ **한정면허 제도**를 **수요자 친화적**으로 **개선**하여 노선 운행시 행정·제도적 애로사항 해소

■ (**기존**) 복수 지자체를 경유하는 노선에 대한 면허발급 주체 불명확

■ (**개선**) 한정면허 발급주체를 기점 소재 지자체로 명확화하고 지자체간 이견시 국토부가 중재·조정하여 신속한 면허발급을 지원

❸ 주요 **광역버스**(M-Bus)에 **온라인 좌석 예약제***를 단계적으로 **확대** (현재 8개 노선 → '20년까지 17개 노선)

*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특정시간대에 원하는 좌석을 예약하여 탑승

3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

○ ①**국민편의 제고**, ②**교통산업**의 **발전**, ③**기존산업 종사자**에 대한 **보호**라는 기본원칙 하에 **사회적 대타협** 추진

3. 공간 분야

◇ 비용절감 등을 위해 생활, 주거 등 공간공유 활성화, 유휴 공공자원에 대한 개방 움직임도 활발

1 [주차장 공유]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

○ **주차공간 공유 촉진**을 위해 **거주자 우선주차장**을 **공유**하는 경우 요금감면*, 추후 배정시 우대 등 **인센티브 부여**(서울시)

* 예) 주차면 배정자에게 주차요금의 최대 50%까지 상품권 등으로 환급

- 주차장 공유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 센서 설치 등 **IoT 기술* 시범도입** (~'22년)

* 주차장에 주차 여부 등을 판별 → 앱을 통한 주차장 정보제공시 활용

2 [주거 공유] 분쟁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

○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점유형태, 분쟁유형.빈도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**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***(법무부)

* 연구용역 등 실태조사 착수('18.12월) →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('19.6월)

【예시】 셰어하우스 입주자간 생활규칙 미지정 또는 생활규칙에 따른 입주자 강제 퇴거명령으로 발생하는 분쟁 등에 대비

3 [공공자원 공유] 공공자원의 개방·공유 확대 및 활용도 제고

❶ **국내** 중앙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보유자원 **개방정보**를 **통합제공**하고 **예약·결제 서비스**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('19년)

* '18.8월부터 442개 기관 대상, 회의실, 강당, 주차장, 연수원, 체육시설 등 개방정보를 정부24 사이트에 통합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중

❷ **해외진출** 국내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**공공기관 등**의 **해외사무소**의 유휴공간을 **공유오피스**로 **전환**('19년~)

- 기업이 해외사무소 유휴공간을 확인·예약 가능한 **온라인 플랫폼 구축**

* '19년 중진공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등 73개 기관 대상 시범실시

❸ **지자체**가 보유한 **유휴공간** 등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**공유공간 조성 지원***

* ('18) 공모를 통해 일부 지자체만 시범적으로 지원 → ('19) 전국 확산

❹ **초·중·고교 생활체육시설** 개방 촉진을 위한 **공유모델*** 시범 도입, **참여 학교**에게 **안전관리비용 등 지원 확대**(서울시)

* 민간 공유기업이 협력학교의 생활체육시설 실시간 예약을 지원하고, 시설·인원 및 안전 등을 전담하여 관리 ('18년 4개교 → '19년 목표 10개교)

❺ **교육청**이 보유한 **미사용 폐교**('18.3월 기준 420개) **활용도 제고**

【주요 폐교 활용계획 예시】
- ㅇ (**전남 법성포초 진량분교**) 전남안전체험 교육센터로 전환 ('19.1월)
- ㅇ (**경남 마리중**) 거창 나래학교(특수학교)로 전환 ('19.3월)

4 [창업공간 공유]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

ㅇ **청년 창업공간**으로 이용시 **공유재산**의 **수의계약**을 허용하고, **사용료·대부료 감경** 허용 ('19.6월 시행)

	현행	개선
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경대상	천재지변, 지자체 출자·출연 비영리법인의 비영리사업에 사용 등	청년 창업공간으로 활용시에도 허용 (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)

4. 금융·지식 등 기타 분야

◇ 자금공유, 지식공유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공유 확산

1 P2P 대출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인하

ㅇ P2P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**이자소득세율 합리화**

- (**기존**) P2P 투자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25%의 소득세율 적용(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은 14%)
- (**개선**) 관련 법*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적격 P2P 플랫폼에 대해 P2P 투자 이자소득세율을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과 동일한 14% 적용**

* P2P 대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예정 ** '20년부터 1년간 한시적 시행

② P2P 대출 투자자보호 강화

○ P2P 업체관련 정보, 연체 채권 실태 등 정보제공·공시강화, 대출 돌려막기로 인한 부실전가 방지 등을 통해 **소비자보호 강화**

*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완료('18.12월)

- P2P 대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**법적 근거 마련 추진**

③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

○ 창업·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위해 **크라우드펀딩 활성화**

■ (**기존**)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7년내 기업만 발행인으로 참여 가능하며, 연간 최대 7억원 모집가능, 중개업자의 경영자문 금지

■ (**개선**) 일반 중소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허용, 연간 발행한도 대폭 확대 (15억원),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 허용 (자본시장법·시행령 개정)

④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K-MOOC를 통한 재능공급 촉진

○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**K-MOOC* 강좌 개발 주체 다양화****

* 온라인으로 대학 등의 우수강좌를 제공하고 토론, 퀴즈 등 양방향 학습 지원
** (현행) 대학, 기업, 출연연 등 허용 → (개선) 민간연구기관, 공익법인 등 추가 검토

- **우수 전문인력의 참여**를 유도하고 **양질의 콘텐츠 공급**을 촉진하기 위한 **유료 서비스**(예: 유료 이수증 발급) **도입** (~'21년)

○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**심화·직업교육 강좌** 등을 **확보**하고, K-MOOC **이수결과**의 **학점 인정 확대**

*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 등 개정('19년 시행)

2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

1. 과세체계 정비

①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간편 과세기준 마련

○ **다수의 공급자**가 **소액의 소득을 창출**하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편의와 행정비용 등을 감안한 **간편 과세기준 마련**

- **500만원 이하**의 **수입**은 **기타소득**으로 분류*함으로써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없이 **원천징수**로 **과세절차 종결**

→ 간편 과세방식을 통해 ①**소득분류 불확실성 완화**, ②**납세편의 제고** 등 납세협력비용의 절감효과 기대

* 현재는 소액의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자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, 사업소득인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신고 의무까지 부담

② 「공유경제 납세 가이드라인」 마련

○ 납세순응(compliance) 제고를 위해 **플랫폼 사업자**와 **공급자**를 위한 **공유경제 분야**의 **납세 가이드라인 제시**

【해외사례】 미국·호주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유경제 관련 별도 세션을 두고 세법규정에 따른 의무와 소득계산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

2. 공급자·소비자 보호

①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

○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**사회적 보호**를 위해 **산재보험 적용 범위**를 **단계적**으로 **확대**

- '21년까지 **방문·돌봄서비스**, **IT 업종 프리랜서** 등 다양한 **플랫폼 기반 노동력 공급자**를 포함*

* (현행) 퀵서비스 기사, 건설기계 기사 등 → (확대) 방문서비스 종사자, A/S 기사(~'20년), 돌봄서비스 종사자, IT 업종 프리랜서(~'21년)

○ **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**이 가능한 **범위**도 **질병·육아** 등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서 허용

* 현재는 종사자가 임의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

○ 장기적으로 **산재보험 대상**을 현행 **근로기준법상 '근로자'**에서 다양한 종사형태가 포함된 **'피보험자' 개념**으로 **확대**

2 플랫폼 노동에 적합한 산재보험 부과·징수 체계 마련

○ 주로 **고용 관계가 모호하고, 고정 사업장이 없는** 플랫폼 노동의 특성*을 감안, **거래건별 산재보험 부과·징수체계** 마련

* ①플랫폼업체가 업무를 배분하고 소비자가 직접 보수 제공, ②여러 플랫폼 업체에 중복 종사, ③단시간·유동적 노동 등으로 평균보수 산출 곤란

- (**기존**) 평균 보수액에 기반한 단체보험으로서 고용주가 납부
- (**개선**) 거래건별로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부과·징수

○ (**추진일정**) **노사정 협의** 등을 통해 **의견수렴**에 **착수**하고,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**건별 요율 체계 마련**

3 O2O 서비스 공급자의 신고의무 부담 완화

○ 카쉐어링 등 O2O **서비스 공급자**가 별도 신고없이 전자상거래 가능하도록 **신고의무 부담 완화** 추진

- (**기존**)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 의무(전자상거래법 제12조)
- (**개선**) 관계법상 인·허가, 사업자등록 완료시 통신판매업 신고 제외

○ 다만, **소비자 보호**를 위해 서비스 공급자의 **환불·손해배상**, **플랫폼 업체의 정보제공** 의무 등은 **존치**

3.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지원

1 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연구·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

○ **정보통신기술(ICT)** 기반 **공유경제 플랫폼 기업**의 활용도가 높은 **유망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**
(법인세·소득세 중소기업 30-40%, 대·중견 20-30%)

○ 데이터·보안 등 ICT **역량강화**를 위한 **인력개발비**에 대한 **세액공제 대상**도 **확대**(법인세·소득세 중소 25%, 중견 8%, 대기업 최대 2%)

구분	현행	개선
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	11개 분야 157개 기술	블록체인 등 16개 신기술 발굴·추가 (조특법 시행령 개정)
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	품질·생산·설비·물류관리 관련 자체교육비·위탁훈련비	데이터·보안 등 ICT 관련분야 추가 (조특법 시행규칙 개정)

2 기업이 공유·활용 가능한 데이터 확대

○ 정부가 보유한 **국가중점데이터 개방**을 **확대***하고, 기업이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**국가데이터맵**** **공개**('19년)

* '22년까지 128종 ** 공공데이터 소재 및 연관관계를 시각화한 자료

○ **빅데이터**를 생산·관리하는 **전문센터 구축**(100개) 및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**분석·유통*** 등을 지원하는 **플랫폼 구축**

* 빅데이터 전문센터로부터 수집한 빅데이터 활용

○ 지능형 서비스로 활용도가 높은 분야의 **AI 학습용 데이터 제공***

* ('17) 법률, 특허 등 4종 → ('18) 관광·문화, 농업, 헬스케어, 음성 등 7종 → ('19) 사물·시설 이미지, 도로·안전·동작 영상, 등 총 10여종 구축예정

3 공유경제 조사·분석기반 구축

○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 현황파악을 통한 정책수립을 위해 **O2O 시장동향·이용실태 조사***를 **실시**

* 분야별 인력·매출·수익모델 등 시장현황, O2O 서비스 이용계층·인지도 등

- 이를 바탕으로 **O2O 서비스 산업분류체계**(안) 마련('19년)

Ⅳ. 향후 추진계획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1.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		
1-1. 숙박 분야		
1-1-1.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	문체부	'19.1/4~
1-1-2. 우수 농어촌민박업 선정 및 홍보지원	농림부	'19.1/4~
1-1-3. 불법 숙박업소 주기적 단속	복지부	'19.1/4~
1-2. 교통 분야		
1-1-1.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內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·반납장소 자율화	국토부	'19.3/4
1-1-2. 카셰어링 차량의 타지역 일시상주기간 확대	국토부	'19.2/4
1-1-3. 카셰어링 차량 고지서 발송장소 변경 허용	국토부	'19.2/4
1-1-4. 카셰어링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	기재부	'19.1/4
1-1-5.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	국토부	'19.1/4
1-1-6. 한정면허 제도 수요자 친화적 개선	국토부	'19.3/4
1-1-7. 광역버스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	국토부	'19.2/4
1-3. 공간 분야		
1-3-1.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	서울시	'19.1/4~
1-3-2.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	법무부	'19.2/4
1-3-3. 공공자원 개방·공유 시스템 구축	행안부	'19.4/4
1-3-4. 공공부문 해외사무소 공간 예약플랫폼 구축	중기부	'19.1/4~
1-3-5.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	행안부	'19.2/4~
1-3-6. 지자체의 공유공간 조성 지원	행안부	'19.1/4~
1-3-7. 초중고교 생활체육시설 공유모델 확산	서울시	'19.4/4
1-4. 금융·지식 등 기타 분야		
1-4-1. P2P 대출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인하	기재부	'20.1/4~
1-4-2. P2P 대출 산업의 법적근거 마련	금융위	'19.4/4
1-4-3.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	금융위	'19.2/4
1-4-4. K-MOOC를 통한 재능공유 촉진	교육부	'19.1/4~
2.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		
2-1. 과세체계 정비		
2-1-1.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 마련	기재부	'19.1/4
2-2-2. 공유경제 납세 가이드라인 마련	국세청	'19.2/4
2-2. 종사자소비자 보호		
2-2-1.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	고용부	'19.1/4~
2-2-2. 산재보험 부과·징수체계 정비	고용부	'19.4/4
2-2-3. O2O 서비스 공급자의 신고의무 부담 완화	공정위	'19.2/4
2-3. 공유기업 혁신지원		
2-3-1. 플랫폼 기업 연구·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	기재부	'19.1/4
2-3-2. 기업이 활용가능한 데이터 확대	행안부, 과기정통부	'19.1/4~
2-3-3. 플랫폼경제 조사·분석기반 구축	과기정통부	'19.4/4